

시스템 인증 규정



적용범위:

본 인증 규정은, TÜV SÜD Korea Ltd. Trading as TÜV Asia Pacific
TÜV SÜD Group 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Company	Web site
TÜV SÜD Taiwan	www.tuv-sud.tw
TÜV SÜD China Shanghai	www.tuv-sud.cn
TÜV SÜD China Guangzhou	www.tuv-sud.cn
TÜV SÜD PSB Philippines Inc.	www.tuv-sud.ph
TÜV SÜD Japan Ltd.	www.tuv-sud.jp
TÜV SÜD South Asia	www.tuv-sud.in
TÜV SÜD China Beijing	www.tuv-sud.cn
TÜV SÜD (Thailand) Limited	www.tuv-sud.co.th
TÜV SÜD VIET NAM Co., Ltd,	www.tuv-sud.vn
TÜV SÜD (Malaysia) Sdn Bhd	www.tuv-sud.com.my
TÜV SÜD PSB Pte Ltd	www.tuv-sud-psb.sg
PT TÜV SÜD Indonesia	www.tuv-sud.co.id
TÜV SÜD MIDDLE EAST LLC	www.tuv-sud.ae

TUV SUD Korea Ltd. : www.tuv-sud.kr

이하, 단독 및 공동으로 TSC(TÜV SÜD Company)로 언급된다.

본 인증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 심사 및 경영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언급)의 인증

본 인증 규정은 관련 인증기관의 현지 법률 제도하에서 요청된 서비스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목차

1. 일반규정
2.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에 대한 특별 규정

시스템 인증 규정



1. 일반규정

1.1 일반사항

- 1.1.1 본 인증규정은 TSC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인증 활동 및 책임 있는 다른 직책에 의한 심사 절차에 적용된다. TSC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규범적 요구사항이나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1.1.2 최초 인증서의 발행과 동시에, 고객은 자동적으로 TÜV SÜD 인증 시스템 파트너가 되며, 최소 한 건의 인증서가 유효한 한 계속 파트너 관계가 유지된다. 심사 및 시스템 인증과 관련하여 모든 재정 및 기술 요건이 충족되고 나면 비로소 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 인증서가 특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용자는 규정된 마감기간 내에 이러한 요건의 충족에 착수해야 한다.
- 1.1.3 발주 전, 고객은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스템이 이미 심사/인증되었거나 또는 심사/인증 과정 중에 있는 모든 다른 조직의 명단 및 관련 활동에 대하여 TSC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각각의 발주에 대하여, 고객은 이러한 인증규정의 최신판을 준수할 것임에 동의해야 한다. 현재 계약관계는 본 인증규정의 유효한 버전에 의하여 개별적인 지배를 받는다.

- 1.1.4 해당 TSC의 인증기관은 심사원이 제출한 문서를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인증서의 발행 여부 및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인증과 관련된 불일치사항/이의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의 및 불만사항은 각각의 TSC 인증기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고객 불만, 이의 및 분쟁 처리”를 관리, 운영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서는 일반 대중에게 가용해야 한다.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된 고객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인증된 문제의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객이 TÜV 인증작업에 불만, 이의 및 논쟁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은 인증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1.1.5 규격에 근거한 인증서는 해당 인증서의 발행과 동시에 유효하다.

문서화된 별도의 합의 사항이 없다면,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서 발행 시점에 모든 인증관련 법적 규정, 적용 규격 및 기타 인증관련 규격을 충족시키는 인증서를 발행한다.

발주 시점이나 계약 결정은 이 점과 관련하여 무관하다.

인증서 사용자는 인증서와 함께 발행된 모든 부속문서와 해당 인증서를 반드시 항상 결부시켜야 한다. 인증서(및 모든 중복 인증서)는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TSC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 1.1.6 고객은, 심사원/각 당국의 책임자(즉, 규제임명 기관, 인정 기관 또는 인증스킴 소유자)들이 고객/제조업체 및/또는 그들의 하청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장에 대한 입회심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시스템 인증 규정



1.1.7 TÜV SÜD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현장활동(즉, 심사)에 직원 보호장비가 필요한 경우, TÜV SÜD와 고객은 방문에 앞서 해당 장비가 제공되어야 함에 동의해야 한다.

1.1.8 심사보고서 인쇄사본과 컴퓨터 전자사본이 함께 취득된 경우, 심사보고서 인쇄사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1.9 각 인증서는 유효한 인증 계약서/주문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인증-시스템에 있는 인증 계약서/주문서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 개별 계약 규정, 각 지침/규칙/절차, 또는 인증기관의 지침/규정에 다른 통보 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I. 이유가 없는 인증 종료

시스템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용자 또는 TSC에 의하여 다음 회차로 예정된 심사일 3개월 전 통보(사후심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갱신 심사).

II. 통보되거나 또는 통보되지 않고 해지하려는 측의 선택에 정당한 원인에 의한 인증 종료, 특히 인증 계약서/주문서에 근거하여 발행된 인증서가 철회될 수 있는 경우, 아래 1-2.1 ~ 1-2.3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철회되거나 제한됨.

인증 종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인증이 만료되면, 해당 인증에 대한 기본적 인증 계약서/주문서 역시 그에 따라 동시에 종료된다.

인증서 사용자의 남아있는 마지막 인증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TÜV SÜD 의 인증 시스템내에 있는 사용자의 자격이 중지된다.

심사비용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인증된 시스템에 대하여 임박한 사후심사 또는 심사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인증 규정에 대한 요건들은 인증 계약서/주문서의 만료 후 및/또는 인증이 만료되거나 철회된 경우 3년까지 유효하다.

1.1.10 본 인증규정의 개별 조항 또는 조항의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시행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 문서의 나머지 인증 규정에 대한 유효성은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무효화거나 그리고/또는 시행할 수 없는 조항들은, 무효 및/또는 시행불가 조항의 뜻과 정신 및 목적에 최대한 근접한 적절한 조항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1.2 인증서 만료, 취소 및 정지

1.2.1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서는 자동으로 만료되거나 또는 취소로 간주된다.

1.2.1.1 표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2.1.2 인증서 사용자가 파산법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들의 채권자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수령인(receiver)이나 관리자를 보유한 경우 및 인증서 사용자가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인증 규정



1.2.1.3 인증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1.2.1.4 법적 요구사항, 각 당국(즉, 규제기관, 인정기관 또는 인증스킴 소유자)의 요구사항 또는 인증서가 근거로 하는 직업 코드 등이 변경된 경우, 특별하게 규정된 기간 내에 인증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TÜV SÜD에 의하여 실행되는 갱신 심사를 통하여, 해당 시스템이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직업코드와 일치하고 있음을 인증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1.2.1.5 기본 인증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1.2.1.6 인증서 사용자가 시장으로부터 인증된 서비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1.2.2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 TSC의 인증기관은 통보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그들의 자유선택으로 인증서를 철회 또는 취소할 자격을 가진다.

1.2.2.1 인증마크/인증서의 추가적인 사용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함, 즉 시장 컨텍스트 내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법에 의하여 금지됨; 이러한 경우, 가능하다면 TSC는 대체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1.2.2.2 특히 인증마크 또는 인증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승인되지 않은 광고가 시행된 경우, 또는 인증마크나 인증성이 오용된 경우, 또는 제품 광고 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러한 오용이 인증서 사용자에게 의하여 용인된 경우

1.2.2.3 대금 체납의 결과에 대한 독촉장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 사용자가 TSC에 보류된 대금을 체납한 경우. 부분 지불에 실패한 경우 또한 모든 인증서의 철회를 유발할 수 있음.

1.2.2.4 지불불능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절차 또는 해당 소송의 보류가 자산부족으로 인하여 거부된 경우

1.2.2.5 해당 위반이 단독적인 부주의한 행위 또는 사소한 행위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서 사용자가 본 인증규정 및/ 또는 사업계약서/주문서의 관련부분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위반을 바로잡기 위하여 TSC는 해당 인증서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유예를 줄 권리를 가지되 의무사항은 아니다;

1.2.2.6 인증된 시스템이 해당 규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인증기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기간 내에 해당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규격의 신판이나 수정본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사용자가 인증서에 나와있는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을 인증기관이 낸 경우;

1.2.2.7 인증서 사용자가 TSC에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또는 인증 근거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TSC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2.2.8 해당 수정사항의 효력발생 후 6주 이내 또는 인증서 사용자가 이러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주목해야 하는 가능성을 발견한 후 6주 이내에, 인증서 사용자가 본 인증규정 및/또는 관련 사업계약서/주문서의 관련부분(예: 관련 실체가격 및 수수료)의 준수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 인증 규정



1.2.2.9 인증서 사용자가 처음부터 인증서 발행 권리에 대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1.2.3 상기(1-2.1항 및 1-2.2항)에 언급된 이유 외에도, 시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인증서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인증서 효력 정지 및 취소의 기타 사유는 <운영절차서 7장, 인증효력 정지 및 취소>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다.

1.2.4 관련 TSC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만료,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릴 권리가 있다. 인증서/인증마크 또는 TSC 명칭의 지속적인 광고나 또는 다른 용도의 사용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 금지 된다. 만료, 철회, 취소된 인증서는 즉각적으로 해당 인증기관으로 반납하거나 및/또는 인증기관의 서면 요청 시 파기해야 한다. 선지불된 면허료는 변상되지 않는다; 아직 지불되지 못한 비용은 반드시 전부 지불되어야 한다

1.2.5 고의적인 의도 및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TSC는 사소한 문제, 인증서의 만료, 철회 또는 중지의 결과로 인하여 고객에게 유발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광고;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정보제공

1.3.1 경영시스템에 관계된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는 관련된 시스템을 홍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서 사용자는 제품 포장(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정보(별도로 제공되거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에 인증기업의 인증사실을 문구로 홍보할 수 있다.

- 단, 제품에 직접 표기하거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 됨
- 문구는 아래 사항을 언급해야 함
 - 인증 고객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고객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인증마크를 실험실 시험, 보정 또는 점검 보고서에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증서 사용자는 인증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는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 인터넷, 안내책자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인증상태 언급 시 인증기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해당 인증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서술은 허용되지 않음,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인증문서 또는 해당문서의 일부 사용 또는 허용 금지,
-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인증의 중지 또는 철회 시, 인증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모든 광고 우편물에 그의 사용을 중단함,
- 인증범위가 축소된 경우 모든 광고 우편을 수정해야 함,
-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 포함)이나 프로세스를 인증함을 의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언급이 사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시스템 인증 규정



- 인증범위 밖의 활동에 해당 인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해 서는 안됨,
-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시스템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대중의 신뢰를 잃는 방식으로 해당 인증을 사용해서는 안됨.

인증서 사용자는 발행된 인증서, 인증 마크 또는 인증된 시스템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관련하는 모든 서술의 사용 및 그 적법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가지며, 또한 고객에 의한 올바른 적용/홍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진다.

TSC에 의하여 작성되는 심사 보고서는 정확하고 완벽한 어휘선택으로 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인용이 가능하다. TSC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사용 또는 광고 목적으로 TSC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 1.3.2 TSC는 고객 정보 및 광고 목적을 위하여 인증서 사용자의 명칭, 심사된 경영시스템 및 기타 유사한 종류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법원이나 각 당국(규제기관, 인정기관 또는 인증스킴 소유자)에 의하여 그와 반대로 지시 받지 않은 이상, 해당 인증기관은 고객 및 인증된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반드시 기밀사항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TSC의 모든 직원 및 그 대리 인들은 기밀사항 규정에 따라 구속을 받게 된다.

1.3.3 고객

- 1.3.3.1 고객은 그들의 인증 상태를 커뮤니케이션 매체(즉, 인터넷, 안내책자 또는 기타 문서)에 언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인증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3.3.2 인증서의 정지, 만료 또는 철회 시, 고객은 해당 인증기관의 지침에 의거, 그들의 인증상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자료의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 1.3.3.3 고객의 인증 범위가 축소된 경우, 고객은 모든 광고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 1.3.3.4 고객은 해당 인증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서술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1.3.3.5 고객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인증문서 또는 해당 문서의 일부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사용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 1.3.3.6 인증기관에 의하여 제품(서비스 포함)이나 프로세스가 인증되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고객의 언급이나 허용은 금지된다(주의: 이에 는 실험실 시험, 보정 또는 점검 보고서 등이 포함됨);
- 1.3.3.7 고객은 인증범위 밖의 활동에 인증이 적용됨을 암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적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1.3.3.8 고객은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스킴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공신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인증을 사용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4 문서보관

시스템 인증문서는 인증서 유효기간 및 전 인증주기를 합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시스템 인증 규정



위에 언급된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모든 법 조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조건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되돌려지거나 고객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하는 문서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실패하거나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경우, TÜV SÜD나 TS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인증 규정



2.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에 대한 특별 규정

2.1 일반사항

TSC는 규제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시스템(이하 “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 작업을 실시한다.

TSC는 경영시스템의 설립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는 수행하지 않는다.

2.2 예비 시스템 평가, 예비심사

요청 시, TSC는 인증 절차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2.1 경영시스템 문서를 근거로, 각각의 법적 근거 또는 기준의 요구조건과 비교하여 시스템기술 내에 잠재적인 개선사항을 예비평가 단계에서 지적한다. 본 평가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고객에게 전달된다.

2.2.2 예비심사(현장 심사 및 고객과 합동으로 규정한 전체인증범위)의 목적은 시스템 내 취약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심사원은 종료회의에서 해당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요청 시, TSC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오직 1회의 예비심사가 실행될 수 있다.

2.3 인증절차

2.3.1 준비사항

2.3.1.1 안내 회의

고객 요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사전에 협의될 수 있다:

- 인증의 목표, 유익성 및 전제 조건
- 세부사항 및 시간과 관련한 인증절차 내 단계
- 법적 근거, 심사를 통제하는 기준, 심사 범위
- 견적서

2.3.1.2 인증심사 준비

TSC가 제출한 견적서를 고객이 서면으로 승인하고 나면, 고객의 경영진은 인증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는 심사 책임자를 임명한다; TSC는 해당 심사에 할당된 심사원들을 고객에게 통보한다(심사팀 또는 선임심사원). 심사원측의 승인되지 않은 자문과 관련된 규격 및 규정에 요약되어 있는 요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고객은 심사원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더하여, 법적인 규제 범위 내에서(즉, 기밀사항의 준수 의무), 고객은 심사팀의 각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배경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시스템 인증 규정



2.3.2 인증심사

최초심사는 2개의 단계로 실행된다(1단계 심사 및 2단계 심사).

고객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직원이 가용한 상태임을 보장해야 한다. 고객은 각 조직단위로의 심사원들의 접근을 승인하며 또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검토를 허용한다.

2.3.2.1 경영시스템 문서의 검토 및 평가 / 1단계 심사

고객은, 고객의 시스템과 관련하는 모든 경영시스템 문서 (매뉴얼 및 필요 시 추가 문서(예: 문서화된 절차서, 작업 및 시험 지침서))를 당국의 적용 지시 및 규격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이 동일한 또는 적절한 규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 고객은 인증범위 정보 (scoping information)가 들어있는 인증서 사본 및 지난 심사 결과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동봉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은, 경영시스템 문서, 고객의 현장별 조건, 적절한 규격, 법에 명시된 법률 상의 요구조건 및 경영시스템 문서 내 이들의 이행에 대한 고객의 이해 상태에 대하여 요구되는 범위까지 (현장심사가 포함될 수도 있음)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1단계 심사 결과를 근거로 인증기관은 경영시스템 이행 수준이 2단계 심사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그 후 2단계 심사의 프로세스 및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객과 동의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2단계 심사에서는 부적합사항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관련 영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 1단계 심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고객에게 통고한다.

동의된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 사이에 시간 간격은 식별된 우려사항(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2.3.2.2 현장심사 / 2단계 심사

2단계 심사에 앞서 고객은 고객과의 공조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계획을 정보용으로 수령하게 된다. 본 심사기간 동안, 고객은 그들의 문서화된 절차의 실질적인 이행을 입증하며 동시에 심사원들은 동의된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심사가 완료되고 난 후 TSC는 종결회의를 통하여 심사 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부적합보고서는 심사 책임자에 의하여 부서(서명)된다. 고객은 필요한 시정 및 시정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 중부적합의 경우, 1회의 재심사가 가능하다. 비용은 필요한 시간에 근거하여 산출(현행 일일 비용).

심사기간 동안 부적합 사항의 심각성이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도 인증서의 발급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TSC는 해당 인증 심사의 인증 종료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해당심사를

시스템 인증 규정



예비심사로 전환하여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경우, TSC는 심사 종료(보고서 포함)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한다.

2.3.3 인증

적용 규격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모든 법적, 공식적 규정이 준수되면, 인증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증 승인 당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2.3.4 인증서 유효기간 / 사후심사

특정 스킴, 규정, 규격, 또는 인증계약서/주문서 내 개별 처리방식이 다른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요구되는(일반적으로 매년) 사후심사가 고객업체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인증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인증서의 발행/승인 후 3년 동안 유효하다.

특정한 규정에 대하여 다른 날짜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사후심사는 늦어도 2단계 심사 최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정당한 경우 TSC는 인증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단기간 통보에 의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단기간에 통고된 심사가 수행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증된 고객에게 통고한다. 사후심사 준비를 위하여, 해당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한 경영 매뉴얼 및 영향을 받은 모든 수정사항이 요약된 목록이 반드시 인증기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사후심사의 경우, 심사원은 해당 경영시스템 해당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택된 경영시스템의 요건/프로세스를 검토해야 한다. 심사원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2.3.5 1차 이후 사후심사

1차 이후 사후심사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인증기관에 의하여 언급된 인증 측면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인증된 고객에게 질문함.
- 고객의 정보 운영(예: 광고자료, 웹페이지)에 대한 평가
- 문서 및 보고서(서류 또는 전자매체 상에 기록된) 제공을 위하여 고객에게 언급된 요청
- 인증된 고객의 성과를 감시하는 수단

2.3.6 갱신심사

인증서 만료에 앞서 갱신심사가 고객업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갱신인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무작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유효성이 점검된다. 본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효한 경영매뉴얼 및 영향을 받은 모든 수정사항이 요약된 목록이 반드시 심사원/심사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1단계 심사가 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

2.4 추가 계약조건

2.4.1 가능한 한 인증기관은 고객이 인증을 광고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인증기관은 제3자에 의한 불만사항, 우려를 유발하는 쟁점사안 또는 고객의 정보가 될 고객 조직 내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토,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인증 및 사후절차의 중요 변경사항 및 인증과 관련이 있는 기준서 내 모든 변경사항이 인증서 사용자에게 통보된다.

2.4.2 고객은 인증과 관련된 적절한 모든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심사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인증서 사용자는 시스템 내 모든 관련 변경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구조/조직 내 수정사항, 또는 인증에 필요한 요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그러나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증 기관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더하여, 인증서 사용자는 그들의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내, 외부 불만사항 및 이행된 시정조치를 반드시 문서화하여 해당 정보를 심사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다음 사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법적 또는 조직적 상태:
- 상업적 상태 또는 소유권(ownership):
- 조직 및/또는 경영진(핵심 직원의 개별 변경사항 포함)
- 연락처 및 사업장 주소
-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범위
- 인증기관 또는 스킴에 의하여 요청된 경우 계획된 변경을 포함,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을 지속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인증서 사용자에게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TCS가 인증서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후심사/갱신 심사를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2개월 주기로 만기일이 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이러한 심사를 요청하는 것 또한 인증서 사용자의 책임사항이다.

2.4.3 규격, 실행 기본코드 또는 기타 규정은 (과도기를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적 근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견적서에 명시된 심사일수는 인증기관의 승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2.4.4 통합된 경영시스템은 식별되어야 하는 개별 시스템의 특정한 측면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2.4.5 인증기관은 발행, 취소 또는 철회된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